

의안번호	2208050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5.3.13.
추 계 번호	25D077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의2제1항 (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·운영) 신설	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을 설 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67조의2 (친환경 소재 사용) 신설	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선거벽보, 현수막을 제작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4조의2제1항 (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·운영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7조의2 (친환경 소재 사용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·운영(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)

-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게시판 구매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를 구매하고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선거 후에는 철거가 필요하여 모니터 구매, 설치 및 철거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의 규격, 수량, 평균 설치 및 철거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, 선거벽보 첩부 수량은 총 229,321매이고 첩부 장소 수는 83,630개소

□ 선거벽보 등에 친환경 소재 사용(안 제67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선거벽보, 현수막을 제작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선거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선거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통상거래가격을 고시하고,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내에서 보전대상 후보자에게 비용을 보전
 -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사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상된 통상거래가격 고지할 가능성이 있고, 해당 가격 내에서 보전해야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친환경 소재의 범위, 단가, 이를 사용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·면·동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
 - 예를 들면, 대통령 선거 시 후보자가 14명(제20대 대통령 선거 기준)이고 읍·면·동에 최대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총 98,924개(=14명×3,533개 읍·면·동×2개)로 추정되고 선거 후에 폐기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